

kakaopay insurance

휴대폰보험 보험약관

고객센터

1544-0022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0542호
(2025.09.01)

홈페이지

kakaopayinscorp.co.kr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취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소멸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예시: 수리의 목적으로 공식수리센터에서 메인보드 교체 또는 리퍼비쉬 제품으로의 교체로 인한 IMEI 변경)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소유의 휴대폰(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가입휴대폰'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회사가 최초 가입 당시 가입 휴대폰의 IMEI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최초 보상 시점에 피보험자가 제출한 공식 수리센터의 수리 내역서에 명시된 IMEI가 피보험자 소유의 가입 휴대폰으로 확정됩니다. 단, 아래의 물건은 가입휴대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밀수품 또는 불법적인 운송 또는 거래과정에 있는 제품
- 2)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복구나 교체비용, 기본사양이 아닌 프로그램
- 3) 장착·부착의 영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용으로 장착된 장비, 제조시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 4) 보호용 덮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이어폰, 충전기나 USB케이블, 전자펜(노트펜 포함) 등과 같이 제품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부속품 및 액세서리
- 5) 수리, 교체 또는 기타 목적으로 "공식수리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물건
- 6) 최초 가입한 휴대폰의 IMEI와 상이한 IMEI의 휴대폰(다만, 수리의 목적으로 공식수리센터에서 메인보드 또는 리퍼비쉬 제품으로의 교체가 발생하여 IMEI가 변경되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휴대폰으로 포함됩니다.)
- 7)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통신요금 및 기타서비스 요금

마. 보험료: 가입휴대폰의 사고보상에 대하여 월 단위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사고발생 당시의 가액으로써 보험증권에 정한 협정가액(사고시점의 출고가)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보상시점의 출고가)을 초과할 때에는 그 보상시점의 출가를 보험가액으로 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단리계산법: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times 10\%) = 120\text{원}$

복리계산법: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 = 121\text{원}$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로부터 다음날 00시부터 개시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공식수리센터: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내 A/S지정점 또는 협력사를 말합니다.

나. 전부손해: 가입휴대폰이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가입휴대폰에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보험기간 중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다. 리퍼비쉬 제품: 단말기 일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품을 교체하여 재생산한 단말기를 말합니다.

라. 실제청구수리비: 공식수리센터에서 가입휴대폰을 수리한 후에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청구한 최종적인 수리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공식수리센터에 납입하고 결제한 영수증 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마. 추정수리비: 공식수리센터에서 가입휴대폰을 수리하는 경우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말합니다.

바. 보안솔루션: 제조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디바이스 전반에서 기밀 데이터와 민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회사는 가입 휴대폰의 도난·분실·수리불가 시 보안 잠금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정 사용과 탈취를 방지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가입휴대폰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한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를 수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가입휴대폰의 손상을 수리하여 발생한 실제청구수리비를 말합니다. 다만,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실제청구수리비의 예시]

가. 공식수리센터의 수리비용: 50만원

나. 제조사나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등으로 할인된 수리비용: 20만원

다. 피보험자 실제 지출금액(영수증 상 지출금액): 30만원(= 50만원 - 20만원)

라. 실제청구수리비: 30만원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3항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의 다음날 00시부터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범람, 태풍, 풍수재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제품의 소각, 몰수, 압류 및 이와 유사한 손해
7. 지연, 사용손실: 지연(회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한함),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 여기에는 시간손실, 이익상실, 가입휴대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편 등을 포함합니다.
8. 가입휴대폰의 감가상각
9. 마모, 성능저하, 잠재적인 결함
가. 마모나 성능의 저하
나. 가입휴대폰의 손상을 초래한 숨겨지거나 잠재된 결함(설계결함을 포함합니다)이나 품질불량
10. 전기적, 기계적 손해: 배터리 전원이거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전기적·기계적 손상이나 장애
11. 프로그램, 수리작업: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또는

가입휴대폰에 행해진 기타 작업

12.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가. 가입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나. 가입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기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13.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가입휴대폰을 위탁 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14. 결과적 손실: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손해

15. 다른 USIM: 최초가입 당시의 USIM이 아닌 타인명의 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16. 그 원인에 관계없이 가입휴대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손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나.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17.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교환이 가능한 경우

18.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

19.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20.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1.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

22.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내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23. 가입휴대폰의 도난 및 분실, 수리불가

[수리불가]

기술적인 사유로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추정수리비가 사고시점 동일제품의 구입가격보다 커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가입휴대폰에 사고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가입휴대폰에 관한 사항
 - 2.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위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손상 가입휴대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공식수리센터에서 발급한 영수증 및 수리내역서 등
 - 2.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상한도액,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③ 다만, 보험증권에 사고보장 횟수 및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존보험가입금액은 사고당 보상한도액으로 설정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1항, 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보험증권에 총 사고보장 횟수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회사는 총 사고보장 횟수를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총 사고보장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⑤ 보험의 목적은 최초 가입 및 회사가 승낙한 변경된 가입휴대폰(리퍼비쉬 제품 또는 메인보드교체 제품)에만 적용되며,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공식수리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파손(침수, 화재 포함)의 경우에는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실제청구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보험금의 예시]

아래의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보험가입금액, 건당 보상한도, 수리금액, 할인액(제조사나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등으로 할인된 수리비용), 자기부담금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1]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 또는 건당 보상한도보다 적을 때

건당 보상한도 (A)	수리 금액 (B)	할인액 (C)	실제청구수리비 (합계금액) (D=B+C)	(이 계약의) 자기부담금: 20% [E=20% *Min(A,D)]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F=Min(A,D) - E]
500,000	400,000	(-)100,000	300,000	60,000	240,000

[예시2]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 또는 건당 보상한도보다 많을 때

건당 보상한도 (A)	수리 금액 (B)	할인액 (C)	실제청구수리비 (합계금액) (D=B+C)	(이 계약의) 자기부담금: 20% [E=20% *Min(A,D)]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F=Min(A,D) - E]
500,000	800,000	(-)100,000	700,000	100,000	400,000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합니다)하거나, 원 제조사 이외의 유사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	--------------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④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나'목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가입휴대폰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제12조(잔존물)

- ① 회사가 가입휴대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②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손상된 가입휴대폰이 회사가 가입휴대폰을

교체 또는 수리한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명시된 잔존물 미회수 부담금 ()원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제13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예시: 수리의 목적으로 공식수리센터에서 메인보드 교체 또는 리퍼비쉬 제품으로의 교체로 인한 IMEI 변경)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예시]

(예시1) 가입휴대폰의 식별을 위한 IMEI, 시리얼번호, 일련번호,

최초통화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기입하는 행위
(예시2) 가입휴대폰의 식별을 위한 자료(스크린샷 등)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요청한 방식으로 휴대폰 상태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상태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시]

- (예시1) 회사가 요구하는 가입휴대폰의 보안솔루션을 활성화 하지 않는 경우
- (예시2) 회사가 요구하는 가입휴대폰의 도난/분실 및 파손여부 상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용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게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면책 조항 [LMA5399]

① 본 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② 본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 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수리불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수리불가인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험기간 중 "공식수리센터"의 수리불가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상한도액,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사고보장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에 종료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정기결제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정기결제 합니다.

[정기결제]
정기결제란 계약자가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정해진 주기마다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입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정기결제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한 결제수단의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iPhone배터리 교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배터리의 기능저하로 인해 개별보험기간 내에 “공식수리센터”에서 가입휴대폰의 배터리를 교체했을 경우, 그 교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배터리 교체비용이란 기존의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를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기준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 ③ 제1항에서 배터리의 기능저하란 배터리 최대 성능 대비 ()%이하/()%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제9호 제외)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생긴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 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
- 2. 변경, 훼손, 제거된 일련번호를 가진 목적물
- 3.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바이러스 또는 담보기기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
- 4. 담보기기의 예방보전
- 5. 제품 리콜을 야기한 기계적인 결함
- 6.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게끔 설계된 보호막

7. 충전기, 어댑터, USB케이블 등 배터리 본체를 제외한 부속품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하나의 사고(동일 수리내역서상에 명시된 수리내역은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또는 건당 보상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나의 사고 예시]

동일한 수리내역서에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수리내역과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수리내역이 동시에 포함된 경우, 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W(제조사보증연장) 및 배터리교체 특별약관(Samsung Care Services)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결함으로 인해, 개별보험기간 내에 “공식수리서비스센터”에서 가입휴대폰을 수리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횟수,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그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개별보험기간 중 가입휴대폰에서 제품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2.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
- 3. 배터리 기능저하로 인한 배터리 교체비용

[배터리의 기능저하]
배터리 최대 성능 대비 ()%이하/()%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 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가입휴대폰의 손상
- 2. 변경, 훼손, 제거된 일련번호를 가진 가입휴대폰
- 3. 가입휴대폰과 동시에 구입한지 여부를 떠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가입휴대폰이 아닌 기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
- 4.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기능상실 또는 내부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사용된 기기의 손해

5.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발생한 정부기관 등의 법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6.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장애, 바이러스 또는 담보기기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담보기기
8. 긁힘, 찌그러짐, 충전 등에 필요한 포트의 깨진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외형적인 손상
9. 담보기기의 예방보전
10. 가입휴대폰이 수리되는 동안 대체기기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11. 담보기기에 저장되거나 기록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12. 제조사의 보증에 의해 보장되거나 공지여부를 떠나 배송 등에 부과된 배송, 운반비용
13. 제품 리콜을 야기한 기계적인 결함
14. 전쟁 또는 각종 적대행위(침략, 모반, 반란, 폭동, 민란 등), 불법행위
15. 일반적인 소모, 마모 또는 점진적인 감소로 인한 기계적 결함(배터리 기능저하 제외)
16.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경우
17.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게끔 설계된 보호막의 손상
18. 제품, 기술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은 손상 또는 담보기기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우선 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 특별약관은 공식수리센터에서 해당 추가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청구수리비를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EW(제조사보증연장) 및 배터리교체 특별약관(SamsungCare Services) 담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손해액의 결정)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준수리비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표준수리비의 정의]

가입휴대폰의 수리를 위해 공식수리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조사 또는 수리센터가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 민원 방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서 별도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품비, 인건비, 공임비, 출장비 등을 포함한 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수리비의 예시]

수리금액이 원래는 60만원이었으나 공식수리센터에서 할인을 먼저 적용하여 (제조사나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단골고객, 행사, 이벤트, 민원방지 등 할인 이유를 불문합니다.) 최종적으로 20만원을 청구하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영수증상 지급금액)이 20만원인 경우에는 표준수리비는 60만원입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 특별약관 제2조(손해액의 결정)에서 결정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우선 보상합니다. (이하 "선순위 보상방식"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보상방식인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 한하여 선순위 보상방식인 계약들끼리 아래의 계산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분담합니다. 단, 제1 항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액	×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	--

주) 위 수식은 선순위 보상방식인 계약만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③ 피보험자가 선순위 보상방식이 아닌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산정 및 결정하며, 이는 해당 청구 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EW(제조사보증연장) 및 배터리교체 특별약관과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도난, 분실, 수리불가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호에도 불구하고 도난, 분실, 수리불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회사가 요구하는 가입휴대폰의 보안솔루션을 활성화 하지 않은 경우
- ③ 회사가 요구하는 가입휴대폰의 도난/분실 및 파손여부 상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④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라 목 6)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 1.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한 제품 교체
 - 2. 수리를 목적으로 공식수리센터에서 메인보드 교체 또는 리퍼비쉬 제품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져 IMEI가 변경된 경우위 사유로 변경된 IMEI를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대한 확인을 받았으나, 확인 받은 가입휴대폰의 보안솔루션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기간 내 회사 및 지정서비스 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 ⑥ 다른 USIM: 최초가입 당시의 USIM이 아닌 타인명의 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지정서비스센터"의 도난, 분실, 수리불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정서비스센터]

회사가 지정한 가입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도난, 분실, 수리불가로 인해 가입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추정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보상시점의 교체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 및 단말수급상황에 따라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계약이 있는 경우 보상시점의 교체단말기 출고가에서 다른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현물보상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이하 "후순위 보상방식"이라 합니다.), 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후순위 보상방식인 다른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손해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은 일정금액 또는 손해액의 일정비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보상방식인 다른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단, 제3항의 "후순위 보상방식"에 따른 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⑤ 다른 계약에서 교체단말기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제3항의 교체단말기 출고가는 사고 단말기의 출고가로 봅니다.

⑥ 피보험자가 교체단말기를 수령하면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보상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교체단말기를 반납하더라도 보상 취소는 불가합니다.

⑦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계약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가입휴대폰의 보안솔루션을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사고보장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시에 종료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분실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 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2. 수리불가의 경우 공식수리센터에서 발행한 수리불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1.15.~2019.5.31.)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